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3.
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1. 29. 박희승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6. 1. 30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

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26.3.10.)
 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회부
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3.11.)
 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26.3.13.)
 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박희승 의원)

2011. 4. 7.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

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고, 2012. 4. 8.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,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.

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-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장기간 분쟁,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이 고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,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,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, 응급, 중증,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(피해자)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,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,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지민)

□ 개정안들은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필수 의료를 기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를 마련하여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책임보험 가입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도 보장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호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임.

□ 다만,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법 및 응급의료법과 별개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, 중대한 과실의 정의에 일부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.

□ 또한, 형사특례 조항 중 기소제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,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대체제도로 도입된 기존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 략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미애)

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,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,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,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음.

또한,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,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판단하게 하는 한편,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.

6. 심사결과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